



국민권익위원회



2024 신학기

#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



Q&A





국민권익위원회



## 적용대상

Q1

**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?**

YES

네 맞습니다.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 
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.

Q2

**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?**

NO

아닙니다.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 
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


국민권익위원회



## 적용대상

Q3

###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(구성원)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?

YES

네, 맞습니다.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 
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(구성원)이 되는 경우  
**공무수행자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.**  
다만, 위원(구성원)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 
청탁금지법(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, 금품등 수수 금지 등)이 준용됩니다.



##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

Q4

선생님과의 면담 시  
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 
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?

NO

안됩니다.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 
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 
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 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 
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



##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

Q5

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 
학생 또는 학부모가  
축·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?

NO

안됩니다.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 
학생(학부모)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,  
사교·의례,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



##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

Q6

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 
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 
할 수 있나요??

NO

안됩니다.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 
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  
다만,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 
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,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 
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

국민권익위원회



Q7

**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 
학부모위원이 교장, 교감선생님께  
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?**

NO

안됩니다. 학생들의 성적, 수행평가, 진학 관련 추천 등  
학교생활 전반을 관掌하는 교장,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 
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 
기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.



##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

Q8

###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?

YES

네, 가능합니다. 현재 담임교사, 교과담당교사 등이  
아닌 경우에는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 
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.



## 학생·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

Q9

**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 
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?**

YES

네, 가능합니다.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 
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 
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


## 학생·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

Q10

###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?

YES

네, 가능합니다.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 
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,  
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,  
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 
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.